

< 붙 임 1 >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 2호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참여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해양경찰청 직접일자리사업 「연안안전지킴이」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 개요

- 활동기간 : '26. 5. ~ 10. / 약 6개월 <서류접수 3.26. ~ 4.1. / 7일>
- 활동비 : 월 1,181,412원(※ 주5일, 월80시간 근무 기준)
- 근무시간 : 월 20일(총 80시간) / 평일 16일·주말 4일(1일 4시간)
- 모집인원 : 총 8명

구분	평택해양경찰서			
배치장소	안산시 구봉도 (해안가)	화성시 국화도 매박섬(도서지역)	화성시 매항리 농섬(갯벌)	당진시 도비도 행서(갯벌)
인원	2명	2명	2명	2명
담당업무	연안안전지킴이(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구역 안전순찰 지원 등)			

지원 자격

- 선발대상 : 만 19세 이상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 결격대상 : 공공기관 등 일자리사업(전일제, 동일시간) 중복 참여자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 ① 지원서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표기) ③ 반명함 사진 1매
④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1부 (* 발급방법 안내문 참조)

- 선택서류 : 해당 대상자 만 제출

-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②해양안전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③ 관련 업무경력 증명서
④ 최근 3년 이내 해양경찰관서 감사장 사본 등

선발 방법: 해양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을 실시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문의처: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31)-8046-2548



평택해양경찰서장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안내문

모집 요강

- 연안안전지킴이 임무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활동 등
- 운영 기간 : 2026. 5. ~ 10. (6개월간)
- 모집 인원 : 8명

관할	중부청(48명)				서해청(38명)				남해청(48명)				동해청(40명)				제주청(2명)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사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강릉	제주	서귀
인원	14	8	14	12	12	6	10	6	4	10	14	8	12	4	6	10	8	10	6	12	8

- 활동 시간 : 월 20일(총 80시간) / 평일 16일, 주말 4일(1일 4시간 기준)
- 지원 자격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주소지 기준)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 결격 사유 :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자

지원방법 및 선발

- 서류 접수 기간 : 2026. 3. 26.(목) ~ 4. 1.(수) <7일간>
- 접 수 처 : 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또는 해양경찰 파출소(방문·우편 접수)
- 제출 서류 (필수 5종, 선택)

필수	① 지원서(홈페이지 게시)	② 반명함 사진 1매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홈페이지 게시)	
선택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표시 / 신분증 지참)	
	⑤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or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발급 방법 하단 참조)	

선택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②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③ 관련 업무경력 증명서	
	④ 해양경찰 관서 발급 감사장 사본 (* 최근 3년 이내 발급분)	

(※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또는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일반, 24.1.1 이후 검진분)

- 선발 방법: 해양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문의처: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31) 8046-2548)

심사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점수
1. 서류 심사		30	
가.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1개당 5점, 최고 10점까지) - 선택제출 1번		10	
나.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1개당 5점, 최고 10점까지) - 선택제출 2번		10	
다. 관련 업무 경험(경찰·군인·소방·교정) - 선택제출 3번		5	
라. 해양경찰관서 감사장 (최근 3년내 발급분에 한함) - 선택제출 4번		5	
2. 체력 검사		30	
□ 경찰관서 측정	▶(종 목) ①약력 측정, ②30초 앉았다 일어나기, ③보행 상태 ▶(점 수) 3개 종목 최종 합산	30	
3. 면접 평가		40	
가.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		10	
나. 지킴이 활동 적합성·성실성		10	
다.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열의		20	
합 계		100	

선택제출 서류 기준

- 제출 원칙: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 해양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 서류 기준충족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

1. 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①~⑦에 한하여 인정)

대 상		증빙 자료	
①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소득 60% 이하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②여성가장	공 통 선 택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부모 부양시 가출·행방불명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또는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인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③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④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⑤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⑥장기실직자(6개월 이상)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⑦성매매피해자		◦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유의사항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만으로는 '저소득층' 인정이 어려움

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 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5,133,571	5,709,090	6,284,609	6,860,128	7,435,646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판단 방법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③ 여성 가장

- 미혼, 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여성, 신체·정신장애 등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①18세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②60세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5조 참조)

2. 인명구조자격증 등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

-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 ‘수상레저’, ‘수중레저’, ‘인명구조’, ‘수상구조’, ‘잠수’, ‘응급처치·구조’ ‘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 해양안전(연안안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

잠수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2급, 요트조종면허, 해기사면허, 수상구조사, 「의료법」상 의료인, 응급구조사1·의료법2급, 인명구조요원강사, 인명구조요원, 응급처치자격증 등

- (유의사항) ‘업무경험 항목과 중복성 있는 자격증’ 및 ‘취득과정 단순 수수료(증)’의 경우 인정 불가, 동일 명칭·주관 자격증은 1건만 인정

3. 관련 업무경험 기준 : ‘경찰·군인·소방·교정직’ 관련 5년 이상 근무경력

체력검사 관련 안내

- 체력검사 평가는 해양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제출하신 건강검진통보서 및 당일 체력평가 사전 문진표에 따라 일부종목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사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PASS제)	점수 부여
가. 절대 악력 측정	남자 31.8kg / 여자 20.4kg	기준 총 족 : 10점
나. 30초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남자 15회 / 여자 14회	기준 불충족 : 7점
다. 보행 상태 검사	외관상 나타나는 보행상태	미 실시 : 5점

기타 참고사항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은 무효가 됩니다.
- 체력 검사 일정은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세부 일정은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지원서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안전지킴이 임무수행 및 활동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결과, 이상항목이 3개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력검사 참여가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청구완료까지 통상 30일 소요됩니다.
-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2026. . .



평택해양경찰서장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제한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Ⅰ 반복 참여제한 원칙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Ⅱ 재참여요건(참여 제한기간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 사업 재참여 신청)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Ⅲ 실업급여 신청자(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는, 제한기간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 사업 재참여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아닌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 재참여 가능
 - 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참여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필요
 - ②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 참여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불요

Ⅳ 반복참여 예외적 허용

- 반복참여 허용되는 참여자 : 65세 이상 고령자
 - ①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 시,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점하여 평가
 - ②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적 특성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접일자리 사업 재참여 허용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진행 가능
 -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를 채용할지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 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 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 권고
- 직접일자리 참여이력이 없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중에서 부족 인원만큼 선발 가능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인적사항	성 명						사 진 (3cm×4cm)	
	생년월일	년	월	일				
현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			비상 연락처				
희망근무지	1지망			2지망				
결격사유	내 용						(O,X) 표시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 경력 여부(자진해촉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동시간대 참여 여부							
취업취약 계층여부	구 분	저소득층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장기실직자	성매매피해
	(✓) 표시							
자 격 증 <small>※ 해양·안전 관련 자격증 기재</small>	자격증명		취득기관			취득연도		
경력사항 (✓) 표시	• 유사경력 5년 이상: 해양경찰 (), 소방 (), 경찰(), 군인 (), 교정 ()							
	• 해경관서 감사장 보유: 유 (), 무 (),							
	• 기타 직접일자리 경력사항 :							
기 타	• 단체 소속 : 지역 어촌계 (), 민간해양구조대 (), 기 타 ()							
활동복 치 수	구 분	90	95	100	105	110		
	(✓) 표시							
<p>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6. .</p> <p style="margin-left: 150px;">지원자 ○ ○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50px;">평택해양경찰서장 귀하</p>								

210mm×297mm백상지(80g/㎡)

※ 기타 양식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별지 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앞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안안전지킴이 선발·운영, 활동비 지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또는 준영구
	(본인) 사진, 계좌번호, 월별 지급액, 위치정보	동의일로부터 12개월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 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동의일로부터 10년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지킴이 보조사업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SCI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연안안전지킴이 관리·운영, 지킴이 활동비 지급,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12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가구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험리사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국방부	군인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증명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류, 연금신청월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연금지급 사실확인서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 고용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완료까지 및 선발완료 후 10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참여자 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상기의 본인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인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귀하

< 붙 임 6 >

연안안전지킴이 체력평가 사전 문진표

< 기본 정보 >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남 / 여	

< 문 진 표 >

신체활동/운동을 증가시키기 전 또는 체력 평가를 받기 전 확인 사항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7개 문항 중 한 항목이라도 ‘예’로 응답한 경우 체력측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에게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신체활동/운동 참가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운동을 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지난달 휴식 시에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운동할 때 심해질 수 있는 관절이나 뼈(예: 허리, 무릎 또는 고관절)의 문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심장질환 등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신체활동/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안안전지킴이 체력검사 참가 동의서

- 체력검사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체력검사 전 병력(가족병력 포함)과 관련하여 운영요원에게 알려졌습니다.
- 체력검사 중 본인의 신체적 이상증상이 있을 시 체력측정을 중지하겠습니다.
- 귀중품 및 개인소지품은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보관하겠습니다.
- (민감 정보의 수집) 체력검사를 위해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체력검사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종료 시까지
 - 수집 및 이용목적 : 체력검사 인증,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 (거부권 및 불이익안내) 참가자는 민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력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체력검사 시 갑작스러운 부상(상해) 및 신체의 이상신호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에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인은 체력검사 운영요원으로부터 체력검사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평가표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점수
1. 서류심사 평가					30	
가.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1개당 5점, 최고 10점까지)						
① 저소득층	② 여성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민자		10	
⑤ 한부모가족	⑥ 장기실직자	⑦ 성매매피해자				
나.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1개당 5점, 최고 10점까지)					10	
다. 관련 업무 경험(경찰·군인·소방·교정)					5	
라. 해경관서 감사장 보유 여부					5	
2. 체력검사 평가					30	
▶ (종목 : 3개) 악력 측정, 30초 앉았다 일어나기, 보행 상태					30	
▶ (점수 : 종목별 합산) 총족 10점, 불충족 7점, 중도포기 5점						
3. 면접 평가					40	
가. 연안안전지킴이 정책(활동)에 대한 이해도					10	
나. 대민활동 적합성·성실성					10	
다.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열의도					20	
합 계					100	

20 . . .

기록자 :

(인)

연안안전지킴이 체력검사 결과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문진표 및 혈압검사 반영	측정결과			총점 30점	특이사항 여부 사유 기재 (30자이내)
			제외종목 체크	약력	앉았다 일어나기	보행 상태		
1			<input type="checkbox"/> 약력검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앉았다일어나기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행상태검사 제외	00.kg	00회	X	30	<input type="checkbox"/> 불참 또는 불참의사 <input type="checkbox"/> 중도포기(이상, 개인의사 등) <input type="checkbox"/> 탈락조치
				10	10	10		
2			<input type="checkbox"/> 약력검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앉았다일어나기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행상태검사 제외			X		<input type="checkbox"/> 불참 또는 불참의사 <input type="checkbox"/> 중도포기(이상, 개인의사 등) <input type="checkbox"/> 탈락조치
3			<input type="checkbox"/> 약력검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앉았다일어나기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행상태검사 제외			X		<input type="checkbox"/> 불참 또는 불참의사 <input type="checkbox"/> 중도포기(이상, 개인의사 등) <input type="checkbox"/> 탈락조치
4			<input type="checkbox"/> 약력검사 제외 <input type="checkbox"/> 앉았다일어나기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행상태검사 제외			X		<input type="checkbox"/> 불참 또는 불참의사 <input type="checkbox"/> 중도포기(이상, 개인의사 등) <input type="checkbox"/> 탈락조치

2026 . . .

기록자 :

(인)

「연안안전지킴이」 외부 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주 소	
계좌번호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자문료, 강의료 대가지급 및 소득세, 주민세신고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③ 보유기간 : 1년

④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87조

⑤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심사 자문료 지급 관련으로 00해양경찰서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미동의 시 위 규정에 따라 자문료, 강의료가 지급될 수 없음

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26년 월 일

동의인 _____ (인)

평택해양경찰서장 귀하

외부 심사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2026년 0월 0일 0요일 00시 실시하는 '평택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평택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원한 대상자 선발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심사 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향후 선발심사 위원회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 또는 직위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휴대폰 전화번호 :

평택해양경찰서장 귀하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 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 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기간 : 2026년 5월 2일 ~ 2026년 10월 31일 (배치일과 계약일 동일)

※ 본 계약은 사전에 확정된 활동 계획 및 활동비 배정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해당 활동이 완료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 : 연안해역 순찰 및 시설물 점검 등 연안사고 예방활동

4.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 및 근무일 : 1일 4시간, 월 20일(월 80시간) 근무

※ 근로시간은 주 20시간 한도로 근무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 주휴일 이외의 휴일은 무급임. 주5일(평일4, 주말1)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일이 편성되며 주별 근무일정은 별도의 상호합의하에 사전에 작성된 근무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휴 게 : 근로기준법에 따름

5. 주 휴 일 : 근로자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의 유급휴일 부여

6.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7. 임 금

① 시간급 : 10,939원(주말 : 시급×1.5)

②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③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 없음 ()

④ 임금지급일 : 매월 10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입금 불가

근무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근로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신청사유					
	대리수령기간	2026년 6월 ~ 2026년 11월 (6개월)				

대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	--	--

위와 같이 근무수당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보조사업자 귀하

근무수당 수령 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입금계좌:

수령내역:

No.	구 분	수령금액	수령일	비 고
1	5월 인건비			
2	6월 인건비			
3	7월 인건비			
4	8월 인건비			
5	9월 인건비			
6	10월 인건비			

상기 본인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근무수당을 이체 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수당을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서명)

 보조사업자 귀하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6. . .()

결 재	현장감독자

구 분	연안안전지킴이 종사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실시자 및 장소	직 책	성 명	교육일자
			26. . .() ~
교육인원	참 석	미 참 석	비 고
교육자료			
교육방식	<input type="checkbox"/> 집합교육 <input type="checkbox"/> 사이버교육 <input type="checkbox"/> 시청각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요 교 육 내 용	• •		
특 기 사 항			

<교육 사진>

“ 사진 ”

“ 사진 ”

연안안전지킴이 배치장소 사고 발생 보고 (양식)

□ 사고 개요

- 일 시 : '26. 0. 0.(토) 00:00경 (지킴이 배치 시간 00:00 ~ 00:00)
- 발생장소 : 00부두(주소지:)
- 당시기상 :
 - ※ 기상특보 / 위험예보 발령여부 등
- 안전관리시설물 등 여부
 - ※ 위험표지판(00m, 0개), 위험알림판(00m, 0개), 인명구조함(00m, 0개)
- 피해현황 : 총 00명
 - 인적사항 : 000 (남, 00세)
 - 구명동의 착용 유무 등 특이점 기재

□ 조치 사항 (필요한 내용만 간략 기재)

- 시차별 : 신고발견 경위, 00파출소 현장이동(00:00), 구조(00:00), 병원 이송(00:00) 등

□ 사고 원인

-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사고원인 판단 또는 추정사항

□ 향후 계획

- 안전관리 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간략 기재

☞ 배치장소 내 사건 사고(우수사례 등) 및 지킴이 자체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청, 본청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본 양식 준용, 필요시 사진 첨부

사 직 서(연안안전지킴이)

- 소 속 : **평택해양경찰서**
- 이 름 : **홍길동**
- 근무 장소 : **__부두**
- 근무 기간 : **배치장소 근무시작일-마지막 근무일**
- 사직 일자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사직 사유 :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건강)**로 인해 계약상 정해진 근로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__**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를 자발적으로 사직 하고자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소속

확인자 : (인/서명)

연안안전지킴이 관련 서류 보존기간

구 분	서류명	보존기간	근거법령(비고)
개인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 선택 제출서류 - 취약계층, 유사경력 증명서 등 	1년	개인정보 이용기간 12개월
근로계약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계산 기초서류 • 채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휴가, 시간 근무제 관련 서류 • 미성년자 연소자 증명서류 • 사직서(연안안전지킴이) • 근무수당 대리 신청서 • 근무수당 수령 확인서 	3년	근로기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채용·심사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킴이 선발 평가표 	3년	자료 요구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평가 사전 문진표 • 체력 검사 결과표 • 외부 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외부 심사위원 평가 지침준수 각서 	1년	개인정보 이용기간 12개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등 기타행정 서류 • 물품 지급대장 	2년	자료 요구 대비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물품 지급 대장

○ 파출소명 : ○○ 파출소

연 번	성 명	지급 물품										지급일	확 인 (서 명)	비 고
		조끼	모자	배낭	신분증	활동 수첩	드로백	경광봉	쿨토시	선크림	기타	반납일		
1	홍길동	✓	✓	✓	✓	✓	✓	✓	✓	✓	✓	4.26 10.30	홍길동	파손으로 ○○ 재교부 등
2														
3														
4														
5														